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증외상 및 응급후송에 대한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설치근거 및 임무를 명시하고,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기간(3년)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 의관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며, 병사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원 하는 제도를 현행화하여 장병들의 진료여건을 보장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단기군 의관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진료 업무보조비를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 의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(안 제5조의2)

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의 근거 조항 신설 (안 제5조의4)

현재 운용 중인 역학조사관 임명대상 기준을 명시하고, 역학조사반의 구성, 자격, 임무, 보고체계 등을 명확화(안 제7조의4, 7조의5)

해석 상 혼선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관련 용어 명확화(안 제5조의2) 原 조항의 신설 목적인 ‘현역병 단체보험제도’를 ‘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’으로 대체 실시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 (안 제13조, 제14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11. 20. ~ 2024. 12. 30.)

대통령령 제 호

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한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 (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설치·운영)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군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국군외상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환자 진료
2. 민간 및 외국군 중증외상환자 진료 지원
3. 군 외상체계 구축 및 운영
4. 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외상 교육 및 훈련 제공
5. 군 외상의료에 대한 연구
6. 그 밖에 군 외상체계 운영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지도, 원격진료 지원

2.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응급처치 지도 및 진료 가능한 군 또는 민간 의료기관 안내
3. 응급환자 민간의료기관 위탁치료 승인, 상담지원
4. 의무후송항공부대에 환자후송 지시 및 항공의무후송 작전통제, 후송병원 및 후송수단 선정 지원
5. 그 밖에 응급환자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

제7조의4를 제7조의5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7조의4) 제1항 중 “본부(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)”를 “본부”로, “군보건의료기관”을 “군보건의료기관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반원”을 “반장은 제7조의4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, 반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7조의4에 따른 역학조사관
2. 그 밖에 군인등에 해당하는 자 중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 및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

제7조의5(중전의 제7조의4) 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“부대”를 “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국군의무사령부에 부대 역학조사의”를 “국군의무사령부(군역학조사반)에 역학조사”로 하며,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국방부(중앙역학조사반)에 역학조사 결과 보고

제7조의4(역학조사관의 임명 등) ① 군내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부대·기관의 장은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

1. 방역,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
 2.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
 3. 군인등에 해당하는 자 중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
- ③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병영 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부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, 부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,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1. 부대 내 감염병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, 출입금지, 이동제한 등 통행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
2. 소독 등을 목적으로 한 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
3. 감염병의심자를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
4.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·접수·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

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

5.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

6.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

제10조제4항 중 “재검사”를 “정밀검사”로, “정밀검사”를 “재검사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등)”을 “(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”을 “교육훈련,”으로, “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”을 “입어 복무 중 군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1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

② 진료비 지원의 방법, 절차,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를 “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국방부장관(제13조제2

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병무청장”을 “국방부장관”으로, “보험 가입”을 “진료비 지원”으로,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)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「군인사법」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. 「군인사법」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 나. 다. (생략) ②·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의2(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<삭제></u> 나. 다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u>제5조의4 (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설치·운영)</u> ① <u>국방부장관은 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군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을 위해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설치·운영할</u>
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국군외상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 환자 진료
2. 민간 및 외국군 중증외상환자 진료 지원
3. 군 외상체계 구축 및 운영
4. 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외상 교육 및 훈련 제공
5. 군 외상의료에 대한 연구
6. 그 밖에 군 외상체계 운영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지도, 원격진료 지원
2.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응급처치 지도 및 진료 가능한 군 또는 민간의료기관 안내
3. 응급환자 민간의료기관 위탁 치료 승인, 상담지원
4. 의무후송항공부대에 환자후

<신 설>

송 지시 및 항공의무후송 작
전통제, 후송병원 및 후송수단
선정 지원

5. 그 밖에 응급환자 지원을 위
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임무

제7조의4(역학조사관의 임명 등)

① 군내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기
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
장관이 정하는 부대·기관의 장
은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
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

1. 방역,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
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및
군무원

2.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군보건의료인

3. 군인등에 해당하는 자 중
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
따른 수의사

③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
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
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

감염병이 확산되어 병영 내 공
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
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부대장에
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
수 있고, 부대장은 특별한 사유
가 없으면, 이에 협조하여야 한
다.

1. 부대 내 감염병 또는 식중독
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
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
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
폐쇄, 출입금지, 이동제한 등
통행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
것

2. 소독 등을 목적으로 한 군 보
건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

3. 감염병의심자를 군병원 등
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
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

4.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
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
건을 사용·접수·이동하거나
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
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
나 폐기처분하는 것

5.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

	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6.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				
제7조의4(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) 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, 각 군 본부(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)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역학조사반을 설치하며, 각급 부대의 군보건의료기관에 부대역학조사반을 설치한다.	제7조의5(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) ① ----- ----- 본부 ----- ----- ----- ----- 군보건의료기관 등----- -----.	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		
③ 제1항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,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의 <u>반원</u>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, 각 군 참모총장,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급 부대의 장이 각각 임명한다.	③ ----- ----- 반장은 제7조의4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, 반원----- ----- -----.				
1. <u>방역,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</u>	1. 제7조의4에 따른 역학조사관				
2.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	2. 그 밖에 군인등에 해당하는				
		군보건의료인		자 중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 및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	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 및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
		3. 그 밖에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·준사관·부사관·병과 군무원 중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 및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		<삭 제>	
		④ 제1항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,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의 임무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		④ ----- ----- ----- -----.	
		1. (생 략)		1. (현행과 같음)	
		2. 군역학조사반		2. -----	
		가.·나. (생 략)	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	
		다.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각 군 본부 역학조사의 결과 보고		다. 국방부(중앙역학조사반)에 역학조사 결과 보고	
		라. (생 략)		라. (현행과 같음)	
		3. 부대역학조사반		3. -----	
		가. 관할 부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		가. -- 지역 ----- -----	
		나.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부대 역학조사의 결과 보고		나. ----- 국군의무사령부(군역학조사반)에 역학조사 ---	

제10조(건강검진) ① ~ ③ (생략)	제10조(건강검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공제회에 위탁한다.	
④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,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 정밀검사----- ----- 재 검사-----.	1.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	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	2. 보험 관련 정산 업무	
제13조(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등)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	제13조(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) ① ----- ----- ---- 교육훈련, ----- ----- ----- 입어 복무 중 군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---.	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	<삭 제>
<신 설>	1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	③ 국방부장관(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병무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병적번호, 입영일자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	
1.·2. (생략)	2.·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	<삭 제>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군인공제회법」에 따른 군인	② 진료비 지원의 방법, 절차,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	제1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방부장관(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	제1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방부장관----- ----- ----- ----- 진료비 지원 ----- ----- 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

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651